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0. 12. 1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1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0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2020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은 차기회의에 보고

2) 보고안건 심의

보고안건 제45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결과 보고』, 제4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제47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결과 보고』, 제48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결과 보고』, 제49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개정결과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보고자께서는 혹시 서면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지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별 이견은 없으셨는데 ‘유형자산’ 개정과 관련되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이슈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계기준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과 관련해서 석유화학산업에 속한 5개 기업과 회계법인 심리실에 개정의 실무적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었음. 석유화학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현재 실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해주셨음. 그리고 회계법인 심리실의 답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 개정과 관련된 실무 이슈는 거의 없었고 석유화학산업 외의 기업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K-IFRS 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각각 동의함

⇒ 원안대로 각각 접수함

□ 보고안건 제5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 개정결과 보고』, 제51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 개정결과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고자께서는 혹시 서면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위원)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과 관련해서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임대주택채권의 차감계정이 아닌 부채로 표시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 건설업종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기업 신

용도 하락에 따른 공사입찰 시 불이익 등을 기업들이 우려하였음. 이는 협회 등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을 고려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 협회에서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사실 이 부분은 기재부나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협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충분한 절차라든가, 가시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보고자) 3년 유효기간을 준 것은 맞음.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데 예전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임. 사실 이것이 회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의견조율을 한 것이고 또 그쪽 의견이 있기 때문에 3년의 유효기간을 준 것임.

○ (위원) 현재 이 기준 바뀐 것이 협회에만 가있는지?

- (보고자) 지난 가을에 공개초안 내면서 협회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줬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각각 동의함

⇒ 원안대로 각각 접수함

- 보고안건 제52호 『○○○ ○○○○○○ ○○○○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개선방안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이 3년 비공개인데 어떤 부분을 안내하는 것인지?
 - (보고자) 감사품질유지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것으로 감사반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 지침을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 (위원) ‘향후 점검 항목’ 부분이 한공회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 (보고자) 지침이 별도의 사전적인 규정은 아니고 기존의 품질관리기준서상에서 감사반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임. 저희들이 점검매뉴얼도 통일화를 시키고 감사반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안내를 하고 지적여부와 준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임.
- (위원) 감사반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는지?
 - (보고자) 기존에는 저희들이 ‘개선권고’만 했고 서면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마무리가 되었는데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서 이행점검을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행점검 후 미이행시에는 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없던 GAAS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까지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된다면 향후에는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 (위원)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증선위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2019년도 품질관리제도 구성요소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기존 감사반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요소이고 개선방안으로 '필수항목에 대한 점검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음. 그러면 기존의 품질관리제도 구성요소 중의 항목을 필수점검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그런 방향이 맞음.

- (위원) 2019년과 2020년 품질관리감리제도를 실시해 보니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항목들은 제외를 하고 필수항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의 질문은 필수항목을 어떻게 선정하셨느냐 하는 것임. 선택항목으로 빠진 '업무의 수입과 유지'의 '업무수입시 위험평가와 검토절차' 항목도 2019년에 보면 지적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선택항목으로 제외가 되어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것임.

- (보고자) 저희가 다년간 감사반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사반 조직 특성상 품질관리검토자. 즉, 전담자가 없다는 것임. 그래서 말씀하신 '업무수입시 위험평가와 검토절차'는 나름 중요한 감사위험관리절차 중 하나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검토와 승인절차가 있어야 감사위험관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감사반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서로 수입계약한 것을 상호위험 검토하는 절차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위험평가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 사항임.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반 특성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적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하고 3인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해서 감사수행 과정의 위험관리를 통한 감사위험에 대한 평가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임.

○ (위원) 新외감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권고를 하고 서면이행을 하고 미이행시 재요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충분히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기존과 달라진 제도가 큰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음. 기존의 단순한 이행점검이 아닌 이행점검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가 많이 강화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미이행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외감규정이 개정되었음.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감리임. 기존에는 없

있던 사항으로 중요감사절차가 미흡한 경우에는 혐의감리를 하고 최종 '중과실 IV단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감사업무제한과 과징금 부과까지 되고 실제 저희가 감사절차 소홀을 적발해서 혐의감리를 진행 중에 있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와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더불어 이행이 된다면 감사반의 품질관리수준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위원) 감사반의 경우에는 아까 한공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에 기초한 품질관리감리가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었다고 보여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 한공회에서 설명한 이 네 가지 기준이 아주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감리가 이행되면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와 감사품질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이번에 한공회에서 수립한 이 필수적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정말로 제대로 철저하게 시행을 하셔서, 또 그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행정적 조치사항과 더불어 GAAS 위반으로 제재하면 상당히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임.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53호 『○○○○·○○ 관련 ○○○ ○○○ ○○○○○ ○○○○ 및 ○○○○』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보고자께서는 혹시 서면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위원)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금액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음. 여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 (보고자) 우선, 감사인 중요성 금액이 계량적 허용범위에 있는 회사 수 비중이 회사 규모가 클수록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을 산정할 때 규모조정계수라는 것이 있음.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순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모가 클수록 규모조정계수를 넣어서 중요성 금액을 당초 비율보다 낮춰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개념임. 그래서 표준 중요성 금액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감사인들은 그런 규모조정계수를 거의 쓰지 않고 있음.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회사 규모가 클수록 계량적 허용범위에 있는 회사 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감사인 중요성 기준과 표준 중요성 기준 간에 마찰이 발생할 때 향후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낮출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위원) 그러면 회계 시장에서 이 규모조정계수는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 (보고자) 표준 중요성 금액을 계산할 때 규모조정계수를 쓰는 것은 저희 조치양정기준에 의해서 외부에 다 공시되고 있음.
- (위원) 향후 계획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안내·지도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식으로 안내·지도를 하실 것인지, 둘째는 안내·지도를 하면 과연 그 안내·지도에 따를 것인지?
- (보고자) 우선, 안내·지도하는 방식은 저희가 온라인 방식으로 회계사와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회계 현안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안내할 계획임.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저희가 이 내용들을 안내하고, 또 한공회를 통해서 주로 회계법인들한테 주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메일을 보내는데 그런 방식으로 안내 및 지도를 할 예정임. 지금 여기에 유의사항이라고 3가지 사항을 적어놓았음. ‘①중요성 금액 산정기준(벤치마크, 적용비율 등)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 ‘②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의2~4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서식에 맞게 중요성 산정기준을 충실히 기재’, ‘③중요성 산정기준이 변동한 경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등’ 이것은 나중에 심사나 감리를 할 때 해당 회사나 감사인들을 지적시 이 부분들을 보고 감사인이 사용한 감사인 중요성 금액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이 유의사항을 감사인들이 따르지 않

을 이유가 없음.

- (위원) '중요성 금액 산정기준(벤치마크, 적용비율 등)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정관처럼 내부규정 샘플이나 모범 내부규정 그런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지금 말씀하신 모범규정 같은 것은 현재 없는 상황이지만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대부분 글로벌 제휴법인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쓰고 있음. 그런데 회계법인마다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일률적이지는 않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모범규정은 없음.
- (위원) 결국 표준 중요성 금액과 감사인 중요성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규모조정계수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음. 대부분 회계법인의 평균치가 중앙치보다 다 큰데 그것은 특정기업의 중요성이 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수년간 표준 중요성 금액을 적용해 왔고 감사인들은 감사인 중요성 금액을 산정할 때 규모조정계수를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보고자) 사실 이 감사인 중요성 금액이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 주로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 사안에 대한 감리조치가 많았지, 2018년과 2019년 조치는 아직 본격적으로 증선

위에 상정이 되지는 않았음.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정이 되면 감사인 중요성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소명사유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느 선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내년에 이것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지난번에 新외감법이 개정되고 양정기준이 개정되면서 감사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에서 출발이 된 것인데, 회계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감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과 감사인 중요성 금액의 차이는 규모조정계수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심. 저는 정말로 향후 이것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음. 아마 큰 회사들의 분식의 이슈가 있을 때 중요성 금액이 이슈로 대두될 것이고 자본시장이나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러면 중요성 금액의 차이가 날 개연성이 높음.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갖고 있는 규모조정계수라는 것은 대형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규모조정계수를 넣어서 중요성 금액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것임.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중요성 금액 본연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예 양정기준의 다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이 중요성에서 반영을 하지 말고, 그

것은 금감원에서 대형회계법인이나 실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3)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84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현 상태는 어떠한지?

- (보고자) 지금 현재는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12월말까지 자산실사에 따른 기준가 조정을 할 예정이고, 펀드 이관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중임.

-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30일에 저희가 의결을 했었는데 이 6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85호 『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예비인가 없이 그냥 본인가 신청을 했는데 사모에서
공모로 갈 때는 예비인가 신청 없이 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
능한지?

- (보고자) 예비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임. 예를 들
어 지금 사모운용사로 충분하게 인적·물적 설비가 있어 별도
로 예비인가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
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6호 『(주)케이비손해보험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퇴직연금 관련해서 보험사, 증권사, 은행들이 많이 나
누어 갖고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실적이 어떠한지?

- (보고자)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퇴직연금이 한 221조 원 정도임.
그중 은행이 한 112조 원으로 한 절반 정도 되고 생보사가 한
50조 원, 손보사가 한 12조 원이고 나머지는 증권사임

○ (위원) 지금 보험사 중에 금전신탁업 말고 종합신탁업인가 받은 곳이 있는지?

- (보고자) 6개사가 겸영신탁업자인데 그중 4개사가 종합신탁이고 2개사가 금전신탁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7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현물분배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PEF가 해산을 할 예정이며, 해산할 때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주식을 기존 GP와 LP에게 현물로 나눠준다는 얘기임. 이미 LP들한테는 현물로 분배가 되었고 GP한테 현물분배하고 잔여재산을 청산하면서 PEF는 해산 할 예정임.

○ (위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의 現주주인 ○○○, ○○○이 법인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자 보유지분을 신설법인(수민인베스트먼트)에 현물출자할 예정'이라는데 현물출자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수민인베스트먼트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어서 ○○○, ○○○씨가 가지고 있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의 주식을 회사에 출자를 하고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임. 그리고 나머지 사원들은 현 대표이사와 그의 부인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에 PEF가 투자를 한 것인데 자금회수하는 과정에서 LP들이 다 빠져나가고 PEF가 갖고 있는 경우가 별 문제 없는지?

- (보고자) 지금 이 PEF는 아직 LP와 GP로 구성되어 있는데 LP들은 주식을 현금분배 받았지만 나머지 현금자산에 대한 청산 때 배분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 PEF나 LP가 소멸한 것이 아님.

○ (위원) 아직 LP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8호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코크렙제5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019년 10월과 11월에 잔여주식 46.2%를 취득하고 이후 2019년 11월20일부터 11월23일 기간 중 15.1%를 처분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 (보고자) 현재 31% 가지고 있음.

- (위원) 주식회사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영등포타임스퀘어 내에 있는지?

- (보고자) 맞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9호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금 여기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과 유사하게 리츠(REITs)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은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국내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도 해외 물류단지나 해외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건은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똑같은 내용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메리츠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화재와 증권이 왜 이렇게 나누어 들어갔는지?

- (보고자) 메리츠증권(주)은 인수단에 참여하게 되어 미매각분을 취득한 것이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은 기관투자자로서 유상증자(Pre-IPO)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1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제292호 『□□□□□□ □□□□□□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293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294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295호 『(주)■ ■ ■ ■ ■ ■ ■ ■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 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의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전력 2회(경고1회, 주의 1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 된 것인지?

- (보고자) '수사기관 통보'의 주요한 이유가 동기판단이 '고의'라는 점임. 저희가 '고의'로 판단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반전력도 가지고 있고 최고위반비율도 36.99%이고 위반횟수도 20회 이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하는 것임.

○ (위원) 위반비율이라든가 위반횟수를 봐서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하여 통보한다고 하셨는데 위반비율이나 위반횟수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있는지?

- (보고자) 위반비율 등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계량화된 기준이 있는데 동기와 관련해서는 위반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행위를 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고 결국 동기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

○ (위원) 현 과징금을 조정할 수 없다면 현 제도상에서라도 지연보고와 누락보고와 미보고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위반행위 결과를 판단할 때에도 조사착수시점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항과 지연보고에 의해 스스로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때 달리 보고 있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이나, '중과실'이나, 그리고 자진보고가 있었느냐를 하향사유로써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원) 과거의 경우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실제적,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법규 규정사항인지?

- (보고자) 과징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위원) (주)○○○○○○○○○○부터 시작해서 ◆◆◆ 등등 위반횟수나 위반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과징금 금액은 똑같음. 물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아무튼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을 밑에 규정에서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현재는 최고위반비율과 그 위반의 주체가 최대주주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로 되어 있음. 그 횡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음.
- (위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다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과징금의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적게 규정이 되어 있음. 과징금 한도가 굉장히 적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 규정도 보면 과태료에 유사하게 단순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금 이것은 개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보고자) 현재 담당과에서 법안 만들고 있고 내년 초에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6호 『(주)센트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297호 『퀴림바이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298호 『한류타임즈(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299호 『(주)씨니팡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4개사 관련 공시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지금까지는 특별한 피해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음.
- (위원) ○○○○○(주)의 경우 설립한지 오래 되었고 상장법인인데 왜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법을 회피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음. 다만, 업무미숙로 증권공모과정에 대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같은 경우에는 상장법인이고 그 이전에도 소액공모를 계속 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로 판단했던 것이고 나머지 회사는 전부 '중과실'로 판단을 했음.
- (위원) ○○○○○(주)는 고의성이 농후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이런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의 안전처럼 5%를 위반으로 금액이 적다면 그냥 납부하겠지만 이것은 금액이 좀 있으니 회사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린 것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함.
- (보고자) 저희들이 비상장법인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방강연도 계속 다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공시교육자료도 제공해 왔음. 지역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조직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여 안타까운 측면이 있음.
- (위원) 지방강연시 책자도 준비해서 배포하는지?

- (보고자) 책자도 준비하여 배포하며, 해당 교육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되어 있음.
- (위원) ○○○○○(주)의 경우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에 해당했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과 반대방향임. 그런데 위반회사가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음. 현행 규정상으로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을 선택할 수 있음. 왜냐하면 그때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의 경우는 회생절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배려라고 저희는 생각함.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이 없는 상태인 것만은 확실함.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간에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있어야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과징금조치를 요청하고 조치완화 혜택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임. 그리고 실제로 과거 2016년 7월에

○○○라는 회사에 대해 분기재무제표상 순손실이 있어 증권발행제한을 상정했으나, 회사가 직접 출석해서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되었다고 보고 오히려 혜택을 철회하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음.

○ (위원) 혜택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보다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 (보고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결국 과징금 제재가 원칙인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안건 제300호 『(주)안트로젠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통보해 올 때 이상감리 종목으로 왔는지?

- (보고자) 다른 혐의 내용이 더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고 적발된 대량보유 상황보고의무 위반만 있어서 이 부분만 조치하기로 하였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13분 폐회)